

· 소음·진동 배출시설의 인허가 업무와 관련한 질의 응답(환경처소음·진동업무 편람 발취)

| 질 의 내 용 | 회 신 내 용 |
|---|---|
| 1. 부지경계선으로 지역구분이 되어 있는 경우 지역보정치의 적용은 소음배출원 소재지역(공업지역)인지 또는 피해예상지역(주거지역)인지? | 부지경계선으로 지역구분이 되었을 경우 보정치는 배출원(측정지점)의 보정치를 적용하여 함. |
| 2. 공장부지경계선상에 브릭담장이 있다면 공장 구내쪽으로 3.5m 떨어져서 소음측정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브릭담장 밖으로 3.5m 지점에서 측정하여야 하는지? | 부지경계선에 브릭담장이 설치되어 있어 담장으로 인한 방음효과가 충분히 인정된다면 브릭담장밖에서 주파수의 회절현상에 의한 압역(Shadow Zone)을 고려하여 측정함. 참고로 담장의 높이가 5m이내인 경우는 담장으로 부터 3.5m 떨어진 외부에서 측정하면 됨. |
| 3. Shearing M / C(절단기)이 소음배출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절단기란 목재, 섬유, 가죽, 고무, 비닐, 종이 등 또한 이와 유사한 자재이외의 자재를 절단 또는 전단하는 것으로(단조 및 프레스 작업에 의하지 않는 기계) 재단기, 직선기, 사링기, 편칭기, 기계톱 등이 이에 속함. |
| 4. 컴퓨터 자수기 1대에 헤드 20개를 설치 가능할 경우 공업용 재봉기 1대로 볼 수 있는지? | 컴퓨터 자수기 본체에 모터 1~2개를 부착하여 10~20대 가량의 헤드(재봉기 형태)를 가동시키며, 옷천 등에 글씨, 그림 등을 새겨넣는 기계라면 헤드수에 관계없이 컴퓨터 자수기 1대는 동력 재봉기 1대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
| 5. 유압진동 성형기가 콘베어 설비, 유압펌프와 같이 소음배출시설 동력합계 10마력 이상의 프레스에 해당하는지 여부? | 유압진동 성형기는 소음배출시설 중 시멘트, 벽돌 및 블록제조 시설에 해당되며, 콘베어설비 및 유압펌프 등은 소음배출시설 중 프레스에 해당되지 아니함. |
| 6. 물, 시멘트, 모래를 비빔하는 혼합기가 소음배출시설중 동력합계 15마력 이상의 분쇄기에 포함되는지 여부? | 물, 시멘트, 모래를 비빔하는 혼합기는 일종의 회전속도를 조절하는 기기로서 소음배출시설중 변속기로(설치허가대상: 동력합계 20마력 이상)분류되어 있음. |
| 7. 소음배출시설 중 유압기 및 진동기를 사용하는 4대이상의 시멘트 벽돌 및 블록제조시설에서 유압기, 진동기 4대이상은 무엇을 의미하며, 마력기준 적용여부는? | 소음배출시설 중 유압기 및 진동기를 사용하는 4대이상의 시멘트 벽돌 및 블록 제조시설의 적용범위는 일반적으로 1개의 유압기나 진동기가 1대의 벽돌 및 블록제조시설에 부착되어 있는 것이 상례이나, 유압기가 여러개 부착되어 1대의 벽돌 및 블록제조시설을 형성하는 경우 1대의 시설로써 간주하며, 따라서 소음배출시설 허가대상은 부착기기의 동력합계(마력) 규모에 관계없이 4대이상의 시멘트 벽돌 및 블록제조시설로 그 범위를 한정하고 있음. |

◎ 환경처고시 제1992-37호
 특정폐기물공공처리시설위탁처리수수료에
 관한고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위탁처리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2년 6월 11일

환경처장관

1. 특정폐기물 종류별 위탁처리수수료

(단위: 원/톤)

| 시설별 | 폐기물종류 | 구 분 | 분류 | 수수료 | |
|------|-------|---------------------------------------|----------------------|---------|---------|
| 소각시설 | 폐유 | 발열량 3,000Kcal / kg미만 | 가-1 | 151,000 | |
| | | 발열량 3,000Kcal / kg이상~5,000Kcal / Kg미만 | 가-2 | 144,000 | |
| | | 발열량 5,000Kcal / kg이상~7,000Kcal / 미만 | 가-3 | 140,000 | |
| | | 발열량 7,000Kcal / kg이상 | 가-4 | 133,000 | |
| | 폐유기유제 | 할로겐족 | 발열량 2,500Kcal / kg미만 | 가-5 | 452,000 |
| | | | 발열량 2,500Kcal / kg이상 | 가-6 | 388,000 |
| | | 비할로겐족 | 발열량 2,500kcal / kg미만 | 가-7 | 149,000 |
| | | | 발열량 2,500kcal / kg이상 | 가-8 | 140,000 |

| 시설별 | 폐기물종류 | 구분 | 분류 | 수수료 | |
|--------------|---|---|---------------------------------------|------------------|-----------|
| | 폐합성고분자 화합물(열가소성) | 폐합성수지 | 5,000kcal / kg미만 | 가-9 | 209,000 |
| | | | 5,000kcal / kg이상~9,000kcal / kg미만 | 가-10 | 194,700 |
| | | | 9,000kcal / kg이상 | 가-11 | 183,600 |
| | | 폐합성고무 | 6,000kcal / kg미만 | 가-12 | 202,100 |
| | | | 6,000kcal / kg이상 | 가-13 | 187,200 |
| | | | 폐합성피혁 | 3,000kcal / kg미만 | 가-14 |
| | | 3,000kcal / kg이상 | | 가-15 | 202,100 |
| | | PCB | 페페인트, 페락카 | | 가-16 |
| | 농도 20%이상 | | 가-17 | 7,563,200 | |
| | 농도 10%이상~20%미만 | | 가-18 | 4,649,000 | |
| | 폐농약 | 농도 10%미만 | | 가-19 | 1,289,000 |
| | | 발열량 3,000Kcal미만 | | 가-20 | 473,000 |
| | 동물성잔재물 | 발열량 3000kcal이상 | | 가-21 | 453,000 |
| | | 발열량 600kcal / kg | | 가-22 | 92,500 |
| | 유기성오니 | 발열량 1,000kcal / kg(유분 3%이상 함유한 것) | | 가-23 | 92,000 |
| | | | | | |
| 물리화학 시설 | 폐산 | 총리량이 정하는 중금속(Pb, Cu, As, Hg, Cd+6, CN) 을 함유한 것 | 농도 10,000mg / l이상~20,000mg / l미만 | 나-1 | 121,000 |
| | | | 농도 5,000mg / l이상~10,000mg / l미만 | 나-2 | 85,000 |
| | | | 농도 200mg / l이상~5,000mg / l미만 | 나-3 | 69,000 |
| | | | 농도 200mg / l미만 | 나-4 | 55,000 |
| | 폐알 카리 | 총리량이 정하는 중금속이외의 중 금속(Fe, Zn, Sn) 등을 함유한 것 | 농도 10,000mg / l이상~20,000mg / mg / l미만 | 나-5 | 84,000 |
| | | | 농도 5,000mg / l이상~10,000mg / l미만 | 나-6 | 68,000 |
| | | | 농도 200mg / l이상~5,000mg / l미만 | 나-7 | 63,000 |
| | | | 농도 200mg / l미만 | 나-8 | 54,000 |
| | | 유기물질을 함유 한 것 | COD 500mg / l이상 | 나-9 | 121,000 |
| | | | COD 500mg / l미만 | 나-10 | 55,000 |
| 고형화및 매립시설 | 폐합성고분자화합물 (열경화성) | | 다-1 | 44,000 | |
| | 유기성오니 | 처리기준이상 함유한 것 | 다-2 | 87,000 | |
| | | 처리기준이내 함유한 것 | 다-3 | 70,000 | |
| | 동물성잔재물 | | 다-4 | 70,000 | |
| | 광재, 분진, 폐주물사, 폐사, 폐내화물, 도자기편류, 조각 잔재물, 폐촉매, 폐흡착제, 폐 흡수제, 오니(유기성의 것은 제외) | | 처리기준이상 함유한 것 | 다-5 | 87,000 |
| | | | 처리기준이내 함유한 것 | 다-6 | 44,000 |
| | 폐석면, 폐석고, 폐석회 | | | 다-7 | 44,000 |

1-1. 폐산 농도별 중화비용

| 폐산농도별 구분 | 분류 | 중화비용 |
|----------------|-----|---------|
| 농도 30%이상 | 라-1 | 171,800 |
| 농도 20%이상~30%미만 | 라-2 | 122,700 |
| 농도 10%이상~20%미만 | 라-3 | 73,600 |
| 농도 1%이상~10%미만 | 라-4 | 24,500 |
| 농도 1%미만 | 라-5 | 2,455 |

<주>

(1) 액상으로 반입되는 폐기물로 수소이온 농도 지수가 2.0이하인 경우에는 “폐산 농도별 중화비용관리인. 1992.7

화비용 분류번호 라-1, 2, 3, 4, 5”의 금액을 합산한다.

(2) 유해물질 함유농도 시험은 폐기물 공정시험법에 의한다.

(3) 처리기준이라함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제3항 별표3의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말한다.

(4) 변압기, 콘덴서, 드럼통 등 밀폐용기에 들어 있는 폐기물로서 처리시설에 투입하기 위하여 절단, 파쇄, 용융 등의 별도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관리공단이사장이 정하는 전처리 수수

료를 추가 적용할 수 있다.

(5) 2종류 이상의 처리대상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위의 처리수수료를 적용한다.

(6) 기타 위의 처리수수료 분류에 해당되지 않는 폐기물의 수수료는 환경관리공단이사장이 환경처장관과 사전협의하여 결정한다.

(7) 현재 시설로서는 처리할 수 없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폐기물위탁자와 환경관리공단이 공동으로 처리방법을 연구검토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소에 반입하여야 할 때는 처리방법이 결정될때까지 보관에 소요되는 보관비를 위탁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또한 처리비용은 폐기물위탁시 환경관리공단이사장과 협의하여 잠정수수료를 적용하고, 추후 처리방법이 결정되면 처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재정산하도록 한다.

(8) 처리위탁받은 폐기물을 환경관리공단에서 운반하는 경우에는 위에 정한 수수료에 다음 폐기물종류별 운반비를 합산한다.

2. 폐기물 종류별 운반비

| 성상 | 구 분 | 수수료 |
|----|---------------|--------|
| 액상 | 고정비(원/톤) | 14,130 |
| | 변동비(원/톤/10km) | 66 |
| 고상 | 고정비(원/톤) | 15,150 |
| | 변동비(원/톤/10km) | 55 |

부칙

① (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 부터 시행합니다.

② (종전고시의 폐지)종전의 공공처리시설 위탁처리수수료(환경청고시 제87-35호)는 이를 폐지합니다.

◎ 환경처공고 제1992-21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법령안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2년 6월 20일

환경처장관

1. 개정사유

새로운 처리방법의 오수정화시설·정화조 및 오수정화시설의 설치면제대상을 추가하고, 동

시설의 설치기준 등을 일부 보완하기 위하여 관련규정 등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한외여과막방법을 이용한 오수정화시설을 추가함.

나. 오수정화시설 설치면제대상을 추가함.

· 오수의 발생이 적은 1일 거주·체류인원이 10인 이하인 독립된 공장의 경우에도 오수정화시설 설치면제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함.

다.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의 적정 설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당해 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신고시 구비서류를 구체화 함.

라. 오수정화시설 설계·시공업자외의 자의 설계·시공승인신청시 구비요건을 완화하고 구체화 함.

마. 개선명령의 이행보고를 확인함에 있어서 오염도 검사기관을 명문화함.

바. 축산폐수배출시설의 관리업무를 개선함.

· 축산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증설규모를 이미 허가받은 축산폐수배출시설의 규모합계의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50이상으로 함.

· 축산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경우는 이미 허가받은 축산폐수배출시설의 규모의 합계보다 100분의 50미만으로 증설하는 경우등으로 구체화함.

사. 정화조제조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제조시설의 변경에 한함)을 하고자 하는 자가 받아야 하는 정화조성능시험을 등록 또는 변경등록신청 전 사전요건으로 명시함.

아. 새로운 처리방법의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에 대한 점검항목을 추가함.

자. 새로운 처리방법의 정화조의 구조·규격 등을 정하고, 기존 정화조의 구조·규격 및 제품표시 기준 등을 일부 보완함.

· 변형 접촉포기방법 및 산화형 혐기성방법을 이용한 정화조를 추가함.

· 살수형 부패탱크방법의 구조·규격중 일부를 보완하여 오수의 균등분배 및 비정상적인 오수의 유출을 방지토록 함.

· 불법·불량 정화조의 유통방지를 위해 정화조의 제품표시를 강화함.